

1. 개정이유

형사사법정보시스템(RKICS) 도입에 따른 사용 근거, 수사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용어 정비 등에 대하여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철도경찰범죄관리시스템에서 철도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대체되어 이에 대한 사용 근거 및 용어 개정(안 제4조, 제77조의2 등)
- 나. 호주제 폐지('05.3월)에 따른 '호주' 용어 삭제 및 「한국수화언어법」 제정('16.2월)에 따라 '수화'를 '한국수어'로 용어 개정(안 제75조, 제93조)
- 다.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서류를 작성할 경우 내용의 정확성과 진술의 임의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의사항 명시(안 제77조)
- 라.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(안 제12조 등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형사소송법」 및 「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」(법무부령)
- 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다. 협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일부개정훈령안

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효율적인 범죄수사 등을 위하여 철도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(Railway police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 이하 “RKICS”라 한다) 및 모바일 업무지원시스템 등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제12조제2항 중 “모사전송”을 “팩스”로 한다.

제17조제5항 및 제6항 중 “R2C시스템”을 각각 “RKICS”로 한다.

제21조제1항 중 “R2C시스템”을 “RKICS”로 한다.

제27조제2항 중 “R2C시스템”을 각각 “RKICS”로 한다.

제29조제2항 중 “무인”을 “손도장”으로 한다.

제33조제2항 중 “계도하기”를 “지도하기”로 한다.

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”을 “다음 각 호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마목 중 “언동”을 “말·행동”으로 한다.

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”을 “다음 각 호의”로 한다.

제51조제4항 중 “모사전송”을 “팩스”로 한다.

제56조제4항 단서 중 “긴급을 요하는 때”를 “긴급한 경우”로, “모사전송
으”를 “팩스”로 한다.

제60조제1항 중 “모사전송”을 “팩스”로 한다.

제62조제4항제1호 중 “언동”을 “말·행동”으로 한다.

제66조제3항 중 “요하는”을 “필요로 하는”으로 한다.

제69조제2항 중 “모사전송”을 “팩스”로 한다.

제71조제2항 중 “장부·자술서·시말서”를 “장부·자술서·경위서 등”
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“대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”를 “대
신 작성하지 않도록 해야”로 한다.

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”을 “다음 각 호의”로 한다.

제74조제2항 후단 중 “신빙할수”를 “신뢰할 수”로 한다.

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”을 “다음 각 호의”로 하고, 같은
항 제16호 중 “친족·호주”를 “친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
의 부분 중 “다음”을 “다음 각 호의”로 한다.

제7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
의 부분) 중 “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의 서식에 따르되, R2C시스템
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R2C시스템에 접속하여 수사서류
를 등록”을 “이 규칙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 등의 서식에 따라
작성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서류를 작성할 경우에 내용의 정확성과
진술의 임의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

한다.

1. 일상용어로 된 쉬운 문구를 사용할 것
2.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술할 것
3. 사투리·약어·은어 등은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일 것
4. 외국어 또는 학술용어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일 것
5. 지명·인명 등을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자·로마자 등을 기입하거나 설명을 붙일 것
6. 각 서류마다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, 조서 또는 진술서에 첨부하는 서류인 경우 진술인으로 하여금 간인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할 것

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7조의2(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이용) 특별사법경찰관리는 「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」 제2조제1호에서 정한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RKICS를 이용하여야 하며, 작성한 문서는 RKICS에 저장·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저장·보관하는 경우에는 RKICS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피의자, 피해자,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
2. RKICS에 작성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아니한 문서

3. RKICS를 이용할 수 없는 시간 또는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하여야 하거나, RKICS 장애 또는 전산망 오류 등으로 RKICS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하여야 하는 문서

제78조제6항 중 “무인하게”를 “손도장으로 하게”로 한다.

제79조제2항 중 “무인하게”를 “손도장으로 하게”로 한다.

제81조 중 “대서 하였을 경우에는 대서한”을 “대신 작성했을 경우에는 대신 작성한”으로, “대서의”를 “대신 작성한”으로 한다.

제84조제1항 전단 중 “우송”을 “우편 송부”로 한다.

제86조 중 “요하는”을 “필요로 하는”으로 한다.

제88조제3항 중 “불명 또는 불비한”을 “분명하지 않거나 미비한”으로 한다.

제92조제3항제4호 중 “언동”을 “말·행동”으로 한다.

제93조제2항 중 “수화”를 “한국수어”로 한다.

제95조 중 “성행”을 “성품·행실”로 한다.

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각 호의 1”을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116조제1항 중 “의거”를 “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수사준칙에 의”를 “수사 등을 준용”으로, “다음과”를 “다음 각 호와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소속장은 제1항의 장부 중 범죄사건부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범죄사건부의 개별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장부 중 체포·구속인명부 및 범죄사건

부의 매 장마다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간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17조 중 “2024년 4월 29일”을 “2027년 4월 29일”로 한다.

부 칙 <제1743호, 2024.04.29.>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및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) ① · ② (생략) ③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범죄수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<u>철도경찰범죄관리시스템(이하 “R2C시스템”이라 한다)</u> , 모바일 업무지원시스템 등의 운용에 관한 세부업무처리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.	제4조(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및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효율적인 범죄수사 등을 위하여 철도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(Railway police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 이하 “RKICS”라 한다) 및 모바일 업무지원시스템 등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</u>
제12조(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피해자 등의 비밀보호를 위해 구두, 전화, 우편, <u>모사전송</u> , 이메일 등 피해접수시 피해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한다.	제12조(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<u>팩스</u> ----- ----- -----.
제17조(정보수집·교환) ① ~ ④ (생략) ⑤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을 개입하지 말고 객관적인 사실을 <u>R2C시스템</u> 정보·정보보고에 등록하여	제17조(정보수집·교환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 <u>RKICS</u> ----- -----

야 한다.

⑥ 소속장은 다른 소속장 및 관계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은 지체없이 통보하고 R2C시스템 정보·정보보고에 등록된 보고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공개·비공개 여부를 선택하여 범죄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.

⑦·⑧ (생략)

제21조(내사사건의 등재절차) ① 제19조의 내사의 착수 지휘를 받은 내사사건은 R2C시스템 내사사건으로 접수·등록하고 지휘를 받은 직후 바로 기록표지상단 중앙부에 별지 형식의 접수인을 찍어 수리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27조(사건발생) ① (생략)

②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의 초동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신속하게 소속장에게 보고하고 피해신고서 등 수사에 필요한 서류를 R2C시스템에서 작성하여야 한다. 다만, R2C시스템 장애 및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에

-----.

⑥ -----

----- RKICS -----

-----.

⑦·⑧ (현행과 같음)

제21조(내사사건의 등재절차) ① -----
----- RKICS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7조(사건발생) ① (현행과 같음)
② -----

----- RKICS -----
-----, --- RKICS -----

는 따로 작성할 수 있다.

③ ~ ⑧ (생략)

제29조(피해신고) ① (생략)

② 피해신고는 피해자의 자필로 받고 서명 날인함을 원칙으로 하되 날인하지 못할 경우 무인을 받고 자필로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대필하여 그 사유를 기재하고 접수자가 서명·날인하여야 한다.

③ ~ ⑦ (생략)

제33조(경범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처리) ① (생략)

②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경범 위반자 및 질서행위 위반자를 단속하여 사안이 경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을 계도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질서유지협조요청서를 발부할 수 있다.

③ ~ ⑥ (생략)

제36조(현장수사 요점) 현장에서 수사를 할 때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다음 사

-----.

③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29조(피해신고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손도
장-----

-----.

③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33조(경범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처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지도하
기 -----

-----.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36조(현장수사 요점) -----

----- 다음 각

항을 명백히 하도록 노력하여
범행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파악
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피의자 관계

가. ~ 라. (생략)

마. 피의자의 인상, 풍채, 특
징, 습벽 기타 특이한 언동

바.·사. (생략)

제40조(검사의 요령과 주의사항)

① 검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
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
다.

1. ~ 12. (생략)

② (생략)

제50조(고소·고발 사건의 수사)

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
를 수사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
주의하여야 한다.

1.·2. (생략)

제51조(고소·고발사건의 수사기

간) ① ~ ③ (생략)

④ 제3항의 통지는 고소·고발
인의 비밀보호를 위해 구두, 전
화, 우편, 모사전송, 이메일 등

호의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

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
마. -----

----- 말·

행동

바.·사. (현행과 같음)

제40조(검사의 요령과 주의사항)

① ----- 각 호---

---.

1. ~ 12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50조(고소·고발 사건의 수사)

----- 다음 각 호의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제51조(고소·고발사건의 수사기

간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 팩스-----

고소·고발 접수시 고소·고발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한다.

제56조(긴급체포) ① ~ ③ (생략)

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건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긴급체포한 사유와 체포를 계속하여야 하는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모사전송으로 승인건의를 할 수 있다.

⑤ (생략)

제60조(출석요구) ① 수사를 하기 위하여 피의자 또는 참고인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 명의로 피의자 출석요구서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, 모사전송,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~ ④ (생략)

제62조(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) ① ~ ③ (생략)

④ 특별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다음 각 호 중

-----.

제56조(긴급체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, ----- 긴급한 경우-----

----- 팩스-----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제60조(출석요구) ① -----

----- 팩스-----

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62조(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
신문 방해, 수사기밀 누설 등 수
사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는
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
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
다.

1. 특별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
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
모욕적인 언동 등을 하는 경
우

2. ~ 4. (생략)

제66조(영상녹화) ①·② (생략)

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를 마
친 후 조서 정리에 장시간을 요
하는 경우에는 조서정리과정을
영상녹화하지 아니하고, 조서
열람 시부터 영상녹화를 재개할
수 있다.

④ ~ ⑦ (생략)

제69조(임상조사 등) ① (생략)

② 피의자 신문 이외의 경우 피
조사자가 소속관서로부터 멀리
떨어져 거주하거나 그 밖의 사
유로 출석조사가 곤란한 경우에

--.

1. -----

----- 말·행동 -----
--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66조(영상녹화) ①·② (현행과
같음)

③ -----
----- 필
요로 하는 -----

-----.

④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69조(임상조사 등) ① (현행과
같음)

② -----

는 우편, 모사전송,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사 할 수 있다.

제71조(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) ① (생략)

② 피의자 기타 관계자가 장부·자술서·시말서 기타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③ 진술사항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이를 작성, 제출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자필로 작성할 것을 권고하여야 하며 수사담당자가 대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72조(피의자신문조서 등 작성에 관한 주의) ①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.

1. ~ 7.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제74조(전문진술의 배제) ① (생략)

② 중요한 사항에 속한 것으로

----- 팩스-----

-----.

제71조(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장부·자술서·경위서 등 -----

-----.

③ -----

-----.

--- 대신 작성하지 않도록 해야 ---.

제72조(피의자신문조서 등 작성에 관한 주의) ① -----

--- 다음 각 호의 -----

---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74조(전문진술의 배제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서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있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자에 대하여 다시 조사하도록 힘써야 한다. 단 사망·질병·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하여 질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75조(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기재사항) ①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해 두어야 한다.

1. ~ 15. (생략)
16. 범인은닉죄·증거인멸죄와 장물에 관한 죄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본범과 친족·호주 또는 동거 가족관계의 유무

17. ~ 21. (생략)

② (생략)

③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 이외의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.

1. ~ 6. (생략)

제77조(수사서류의 작성)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에 사용

-----.

----- 신뢰할 수 -----

-----.

제75조(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기재사항) ① -----
-- 다음 각 호의 -----
-----.

1. ~ 15. (현행과 같음)

16. -----

----- 친족 -----

17. ~ 21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다음 각 호의 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제77조(수사서류의 작성) ① -----

하는 문서·장부 및 서식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의 서식에 따르되, R2C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R2C시스템에 접속하여 수사서류를 등록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-----의
규칙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
준칙 등의 서식에 따라 작성--

-----.

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서류를 작성할 경우에 내용의 정확성과 진술의 임의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.

1. 일상용어로 된 쉬운 문구를 사용할 것
2.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술할 것
3. 사투리·약어·은어 등은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일 것
4. 외국어 또는 학술용어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일 것
5. 지명·인명 등을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자·로마자 등을 기입하거나 설명을

<신 설>

붙일 것

6. 각 서류마다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, 조서 또는 진술서에 첨부하는 서류인 경우 진술인으로 하여금 간인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할 것

제77조의2(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이용) 특별사법경찰관리는 「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」 제2조제1호에서 정한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RKICS를 이용하여야 하며, 작성한 문서는 RKICS에 저장·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저장·보관하는 경우에는 RKICS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피의자, 피해자,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
2. RKICS에 작성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아니한 문서
3. RKICS를 이용할 수 없는 시간 또는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하여야 하거나, RKICS 장애 또는 전산망 오류 등으로

	<u>로 RKICS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하여야 하는 문서</u>
제78조(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)	제78조(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)
① ~ ⑤ (생 략)	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인장이 없으면 날인 대신 <u>무인하게</u> 할 수 있다.	⑥ ----- <u>손도장으로 하게</u> ----.
제79조(문자의 삽입·삭제) ① (생 략)	제79조(문자의 삽입·삭제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인 경우 문자를 삽입 또는 삭제하였을 때에는 난외에 “몇자 추가“ 또는 “몇자 삭제“라고 기재하고 그 곳에 진술자로 하여금 날인 또는 <u>무인하게</u> 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손도장으로 하게</u> ---- 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81조(서류의 대서) 본인의 문맹 등 부득이한 이유로 서류를 <u>대서</u> 하였을 경우에는 <u>대서한 내용</u> 이 본인의 의사와 다름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<u>대서의</u> 이유를 기재하고 본인과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여야 한다.	제81조(서류의 대서) ----- ----- <u>대신 작성했을 경우에는 대신 작성한</u> ----- ----- <u>대신 작성한</u> ----- -----.
제84조(감식자료 송부시의 주의)	제84조(감식자료 송부시의 주의)
① 감식을 하기 위하여 수사자	① -----

료를 송부함에 있어서 변형·변질·오손·침습·멸실·혼합 등의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우송의 경우에는 그 포장·용기 등에 대하여 세심 유의하여야 한다. 특히 필요한 때에는 직접 지참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86조(감정의 의뢰 등) 수사를 하기 위하여 사체해부·지문·필적·총기 그 밖의 감별 등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타의 감정기관이나 적당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의뢰 또는 위촉함에 있어서는 소속장에게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.

제88조(감정서) ①·② (생략)

③ 감정서의 기재에 불명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을 요구하여 감정서에 첨부하여야 한다.

제92조(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) ①·② (생략)

---- 우편 송부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6조(감정의 의뢰 등) -----

----- 필요로 하는 -----

-----.

제88조(감정서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분명하지 않거나 미비한 -----

-----.

제92조(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성폭력 피해아동 등 조사시
신뢰관계자는 피해아동 등의 시
야가 미치지 않는 적절한 위치
에 좌석을 마련하고, 조사전에
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
있는 경우 동석자의 퇴거를 요
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
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사유가
발생하거나 그 염려가 있는 때
에는 동석자의 퇴거를 요구하고
조사할 수 있다

1. ~ 3. (생 략)

4. 그 밖에 동석자의 언동 등으
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
려가 있는 경우

④ (생 략)

제93조(장애인에 대한 특칙) ①
(생 략)

② 성폭력 피해자가 언어장애
인, 청각장애인 또는 시각장애
인인 때에는 본인 또는 법정대
리인 등의 의견을 참작하여 수
화 또는 문자 통역 등의 방법을
활용하여 조사한다.

③ (생 략)

제95조(소년사건 수사의 기본) 소

③ -----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 말·행동 -

④ (현행과 같음)

제93조(장애인에 대한 특칙) ①
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한
국수어 -----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95조(소년사건 수사의 기본) --

년사건의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한 그 환경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에 대한 특별한 심리자료를 제공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정신으로 수사하여야 한다.

제109조(송치서류)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기록에 사건송치서, 압수물 총목록, 기록목록, 의견서, 범죄경력·수사경력조회 회보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「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「지문을채취할 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」 제2조제2항제1호·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견으로 송치하는 때에는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및 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.

1. ~ 4. (생략)

성품 · 행실

제109조(송치서류) ①

각 호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⑨ (생략)

제116조(장부와 비치서류) ① 소속장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 제122조에 의거 수사관계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.

②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서식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에 의하고 그 이외 사용할 서식은 다음과 같다.

1. ~ 32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제117조(유효기간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

② ~ ⑨ (현행과 같음)

제116조(장부와 비치서류) ① -----
----- 따른 -----

--.

② ----- 수사
----- 등을 준용-----
---- 다음 각 호와 -----
-----.

1. ~ 32. (현행과 같음)

③ 소속장은 제1항의 장부 중 범죄사건부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범죄사건부의 개별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장부 중 체포·구속인명부 및 범죄사건부의 매 장마다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간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17조(유효기간) -----

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<u>2024</u> <u>년 4월 29일</u>까지 효력을 가진 다.	----- <u>2027</u> <u>년 4월 29일</u>----- --.
--	---